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34

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 안철수·강대식·이헌승

최형두 • 이종배 • 서천호

백종헌 · 김상훈 · 박충권

배준영 • 권영세 • 최수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·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.

그런데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한 주권 국가의 사회적·경제적 안정에 밀접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 정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게다가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. 이에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수립·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"적정 생산기반"을 "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"으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"농업과"를 "농업 및"으로, "발전을"을 "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"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"농지가"를 "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	제14조(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
발전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발전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	②
및 식품산업 발전계획(이하	
"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	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	2
자급목표, 그 추진계획(<u>적정</u>	<u>농지</u>
<u>생산기반</u> 의 확보방안 및 재원	<u>등 적정 생산기반</u>
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)	
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·개	
선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자	
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	
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	
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	
한다.	
2의2. ~ 6. (생 략)	2의2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31조(농지의 소유 및 이용) ①	제31조(농지의 소유 및 이용) ①
•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
3	국가와 >	지방자치	단체님	는 농
지가	<u>농업과</u>	국민경	제의	균형
있는	<u>발전을</u>	위하여	효율	<u> </u> 목적으
로 c	이용될	수 있도	록 뇽	등지의
이용	증진에	필요한	정책	을 세
우고	시행하여	여야 한다	구 .	

제32조(농지의 보전) ① 국가와
지방자치단체는 <u>농지가</u> 적절한
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
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
고 시행하여야 한다.

(2)	(생	랴`
	(0	7,

	③
	<u>농업 및</u>
	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
	르 <u>르</u>
제	32조(농지의 보전) ①
	제14조제3항제1
	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
	등을 위하여 농지가
	<u>.</u>
	② (현행과 같음)